

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

Counter-Terrorism Strategy of Terrorism and Developmental plan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박 준 석*

〈목 차〉

I. 서 론	IV. 민간시큐리티 상호협력 방안과 대응방안
II. 각국의 대테러 현황	V. 결 론
III.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 및 조직구성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학·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대테러, 민간시큐리티, 대테러 전문가, 자격제도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I. 서 론

본연구의 대테러의 학문적영역의 구축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질적 연구가 국제적 국내적 정서에 맞게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등 적용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그래서 정부주도형에서 학계와 민간부분과 상호협력방안을 위한 현실적 연구가 필요해서 접근하였다. 학문적영역과 학문적범위가 모호한 것이 테러학의 분야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정치학적 접근의 연구가 많았지만 이제는 테러의 정치적 수단보다는 다양한 변화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변화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적 연구가 세분화되어 과학적 접근방법과 수단, 목적,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여 다각적으로 국가기관에서의 정보를 학계와 공유하여 국민들에게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테러리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FBI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정보와 대중을 위협, 또는 강압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적인 폭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Brain Jenkins, Rand Coporation (Cited by Terrorism Research Center 2005)에서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폭력 사용을 위협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Jenkins는 테러리즘 이라는 용어가 담화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과학적인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테러리즘 이라는 용어는 범죄라는 용어와 그다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범죄와 테러리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은 테러분자들이 범죄보다도 한차원 높은 고도의 명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테러의 정의는 다양하게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테러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 예로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의 피랍사건에서 탈레반의 23명의 납치사건은 테러 사례로 잘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1월 10일 나이지리아 바이엘사 남부해안 오구 소재 대우건설 가스파이프라인 공사현장의 근로자 숙소에 과거 MEND의 무기 공급 조직책임이었던 ‘조슈아 마카베’ 라는 인물이 이끄는 신생무장단체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며 침입, 우리 근로자 9명과 현지인 1명이 피랍되었다가 무장단체와 주정부간 협상 타결로 1월 13일 전원 풀려난 바가 있다¹⁾. 또한 2007년 3월 22일 이라크 바그다드 총리 본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말리키 총리의 공동회견 중 본관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 로켓포 공격사건의 테러가 발생되었다²⁾.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테러의 위

1) 국가정보원, 월간테러정세, 2007년 2월자.

2) 국가정보원, 월간테러정세, 2007년 4월자.

협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한 대처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테러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형인 대응전략을 민간상호협력영향, 대테러 방지를 위해 통제 기구 설치, 국제사회의 협력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간시큐리티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국가기관의 선진국형 모델을 기초로 하여 통합적인 대테러 법안 제정 및 통합센터를 설립하고 대테러 안전 기구를 세분화하여 대테러 국제협력 강화 및 국민들의 이해와 정부기관과 산학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가 대테러 안전 시스템에 매뉴얼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학협력방안에서 특히 민간시큐리티업체의 역할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국가기관의 역할을 민영화하여 좀 더 체계적인 접근과 발전방안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접근하였다.

테러의 각종 국내외 연구문헌과 대테러기관의 보고서 및 자료를 분석하고 질적 연구의 접근을 하였다. 국내외 선행자료, 논문, 관련서적, 인터넷 검색, 간행물, 저널, 언론매체의 보도자료, 보고서 등 자료를 연구하였다.

II. 각국의 대테러 현황

1. 미 국

9.11 테러사건 이후 2001년 10월 제정된 미국의 ‘테러차단 및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수단 제공법’ (이하 ‘반테러법’ 이라 한다)(USA PAT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of 2001)은 테러용의자 색출을 위해서라면 특정한 죄목 없이도 최고 7일간 구금할 수 있고 수사 당국의 전자도청 및 감청 권한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테러와 관련한 조사 목적으로 각종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고 제한 없는 가택수색 권한도 부여해 이민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법은 테러수사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형벌규정의 강화와 테러관련자에 대한 영장 없는 구금을 인정하는 등 인권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국법(Office of Homeland Security Act of 2001)을 제정하여 국가안보국을 신설하여 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에 관한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이 전략에 따른 부처간 업무조정권을 부여하였다.³⁾

미국의 국토안보법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국토안보부 제2장은 정보 분석 및 기반시설 보호 제3장은 국토안보 지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제4장은 국경 및 교통안전국 제5장은 비상대비 및 대응 제6장은 미국과 기타 정부조직들의 군대구성을 위한 자선기금 제7장은 관리 제8장은 비연방 실체들과의 조정 제9장은 국토안보회의 제10장은 정보보호 제11장은 법무부 부서 제12장은 항공회사 전쟁위험 보험법령 제13장은 연방 노동력 개선 제14장은 테러대응을 위한 항공기 조종사의 무장 제15장은 전환 제16장은 항공교통 안전과 관련된 기존 법률 제17장은 관련 규정 및 기술적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 분석과 기반보호는 CIA, FBI, NSA, 국립영상지리원(NIMA), 국방정보국(DIA) 등 첩보기관 및 각급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기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토안보부는 정보 분석 및 기반보호를 위하여 담당 차관보를 두게 되고 그 아래 다시 정보 분석 담당 차관보와 주요기반보호 담당 차관보를 두게 되고 본국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법 제201조) 국토안보부의 규모는 2003년 1월 17,0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미국 행정부의 15번째 부서로 정식 출범하였다.⁴⁾ 이 부서는 과거 22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국토안전에 관한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설립한 기관이다.⁵⁾

국토안보부의 임무와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내에서의 테러리스트 공격을 억지
-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감소
- 미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손상을 최소화하고 복구지원
- 자연적·인위적 위기와 비상계획에 관하여 중심으로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국토안보부로 이관된 실체들의 모든 직무를 수행
- 국토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국토안보부내 기관 및 산하부서의 직무가 명시적인 특정명령에 의하여 축소되거나, 예외로 간과되지 않도록 보증
- 국토안보를 목적으로 한 노력, 활동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미국 전체의 경계안보가 축소되지 않도록 보증
- 불법 마약 거래와 테러리즘간의 연계를 감시하고, 당해 연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며, 기타 불법마약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⁶⁾

3) 신의기, 각국의 테러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대테러 학술세미나, 2006. pp. 110-112.

4) 이대우, 「한국의 국가안보와 대테러대책」, 세종정책토론회 보고서, 세종연구소, 2004, p. 167.

5)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curing Our Homeland(2004), p. 3.

6) 제성호, 「9.11 테러이후 미국의 대테러 대응체계 변화」, 대테러연구논총 제2호, 국가정보원, 2005, p. 17.

또한 2003년 5월 1일부로 CIA·FBI·국토안보부 등 유관기관 합동기구(대테러 통합정보기구)인 테러위협통합센터(TTIC)를 출범시켰다. TTIC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능한 위협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외로부터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테러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⁷⁾ 이미 알려지거나 의심이 가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테러위협에 관련된 정보수집 요건을 만들고 있다. TTIC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대테러 자료들은 2,000여개 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⁸⁾ 국토안보부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수요자이다.⁹⁾ 중앙정보부장(DCI)의 지휘를 받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의 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을 사례로 볼 때 북한의 테러발생에 대해서 한국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이후 이라크의 한국군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국제테러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예로 한국인 근로자 김선일 씨가 이라크 테러단체에 의해 피랍된 후 살해된 사건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은 여러 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¹⁰⁾ 국민일보 2004년 7월10일자, 경향신문 2004년 10월4일자에 의하면 이라크 무장단체인 ‘1920 혁명군’ 과 ‘검은 깃발’ 이라는 무장단체가 한국에 대한 테러를 경고하였다.

최근에는 부산 APEC 회의로 인한 테러위협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2 한일월드컵대회부터 우리나라에 각종 대규모 행사, 회의 등에 항상 테러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대테러법안 제정안, 정부의 각 부처간의 대테러 부서의 통합화 즉 외교부는 국외 사건에 대비한 종합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국내 사건에 대한 예방 및 대비책은 행정자치부의 소관이다. 법무부는 국외 테러리스트들의 국내 잠입을 저지하는 임무,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관련 테러 임무,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련 테러 임무, 국방부는 군 특공부대 유지 및 운영의 임무, 국가정보원은 종합적인 국가 대테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부서들 외에도 화생방에 관련된 환경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약 20개 부처가 제 각각의 대테러 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7) The Department of State, Fact Sheet: Bush to Create 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 28 January 2003. <http://usinfo.state.gov/topical/pol/terror/03012806.htm>.

8) John O. Brennan, "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 Statement," (2003. 7. 8), <http://www.apfn.net/messageboard/08-07-03/discussion.cgi.93.html>

9) Washington Post, January 29, 2003.

10) 국가정보원, 「2002년도 테러정세」 (2003), pp. 31-38.

2. 영 국

영국의 테러대책은 북아일랜드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아일랜드 공화군(Irish Republican Army : IRA)의 활동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어, 1973년 ‘북아일랜드 긴급조치법’(Northern Ireland(Emergency Provision)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북아일랜드에만 한정하여 시행된 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선전·지원, 테러에 대한 자금지원과 모금행위를 금지하고, 테러불고지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2000년 7월 20일 새로운 테러법(Terrorism Act 2000)을 제정하여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테러가 북아일랜드 사태에 초점을 맞춘 임시법적 성격을 가진 것인데 비해 영구적인 성격의 법으로 대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민사적 입증책임의 분배의 원칙에 따른 테러단체 통화의 압수와 금융기관에 대한 테러수사 목적의 예금계좌 확인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테러에 대한 수사권을 강화하고 처벌을 위한 절차상 특례를 인정하였다. 영국은 이 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수단 외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인 대책을 추가하였다. 2001년 12월 14일 ‘반테러리즘, 범죄 및 안전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테러범죄자에 대한 자산동결, 출입국관리, 병원체 및 독극물 통제, 통신자료 취득 등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테러에 관한 수사권을 강화하고 있다.¹¹⁾

2001 대테러법에서는 테러용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들을 두고 있다. 즉 테러 용의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변장을 하는 등 신분을 허위로 밝히는 것으로 불만한 사정이 있으면 신분확인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위하여 적절한 신체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

이 경우 채취한 지문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지만, 테러관계 법령에 의해 유치된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될 수 있다. 즉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하면 범죄 증거가 인멸되어 타인에게 위해가 미치거나 테러방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급 이상의 경찰관의 결정으로 경찰관이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 이는 테러범죄의 특성상 비밀을 보장할 경우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밀보장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¹⁴⁾

11) 신의기, 각국의 테러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대테러 학술세미나, 2006. pp. 112~114.

12) 2001 테러법 제 89조.

13) 2000 테러법 제 58조 13-18항.

14) 신의기, 각국의 테러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2006. pp. 115-116.

3.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형사법원은 수사법원(jurisdiction d'instruction)과 판결법원(jurisdiction de jugemen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범죄의 수사는 각 지방법원의 예심판사 또는 수사판사(le juge d'instruction)가 담당하고 있다.¹⁵⁾ 1986년 테러대책법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테러범죄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은 체제가 정비된 파리지방 법원에 집중시키고, 비교적 경미한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토지관할에 의한 재판권과 경합하는 관할권을 파리법원에 부여함으로써 테러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일원화하였다.¹⁶⁾ 프랑스는 1984년 경찰청 산하에 대테러조정기구를 설치하였고 1986년 테러대책법(테러방지 및 국가안전에 관한 법률), 신원검사 및 확인법, 형의 집행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사법절차상 테러범죄를 수사·재판함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파리지방검찰청내 중앙테러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테러범죄를 전담케 하였으며 테러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내무부 종합정보국과 대외치안총국 테러대책과를 설치하였으며, 국가보안국 테러대책과에서는 국제테러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테러발생시 현장관리 및 사건진압에 대비하여 설치된 국가헌병대 지원부대(GIGN)가 테러사건 발생시 현장진압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에도 대테러경찰여단이 활동하고 있다.¹⁷⁾ 프랑스는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한 '일상안전에 관한 법률 (loi 2001-1062, 15 Novembre 2001 relative a la securite quotidienne)'을 제정하여, 2001년 11월 15일 공포하는데 이 법 제 5장에서 '테러대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항구, 공항, 백화점,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운행중이거나 주·정차중인 차량에 대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형법에 테러범죄로 열거된 범죄에 자금세탁죄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테러조직이 마약범죄조직 등의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자금을 동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¹⁸⁾ 또한 테러의 예방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¹⁹⁾ 중앙테러파일(Fichier Centralise du Terrorisme, FCT)과 헌병테러파일(le Fichier Terrorisme de la Gendarmerie)²⁰⁾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중앙테러 파일은

15) 프랑스의 예심판사제도에 관하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각국의 구속제도, 1991, 136-138면 참조.

16) 이 경우 테러범죄가 전국적 국제적으로 연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역적, 국지적인 성격에 불과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법관들도 재판권을 갖는 것이다. A. Vercher, Terrorism in Europe: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Analysis, Oxford: Clarendon Press, 1992, pp. 320-321.

17) 장석현.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2005. p. 10.

18) 신의기, 각국의 테러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대테러 학술세미나, 2006. p. 121.

19) 법규명령 91-1051, 91-1052.

20) 법규명령 95-1211.

테러관련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외국인 테러분자, 외국 테러조직 관련자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특수성을 고려 알제리와 관련된 테러집단이 주된 관리대상이다. 현병테러파일은 현병이 관리하는 각 지역 테러분자, 테러용의자, 테러피해자, 잠재적 테러피해자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Ⅲ.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 및 조직구성

현대과학기술의 발달로 대테러의 대량살상무기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개념에서 볼 때 재래식 전쟁과 달리 현대의 전쟁은 테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nhanced high explosive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 3-1〉 테러 유형에 따른 예상 피해규모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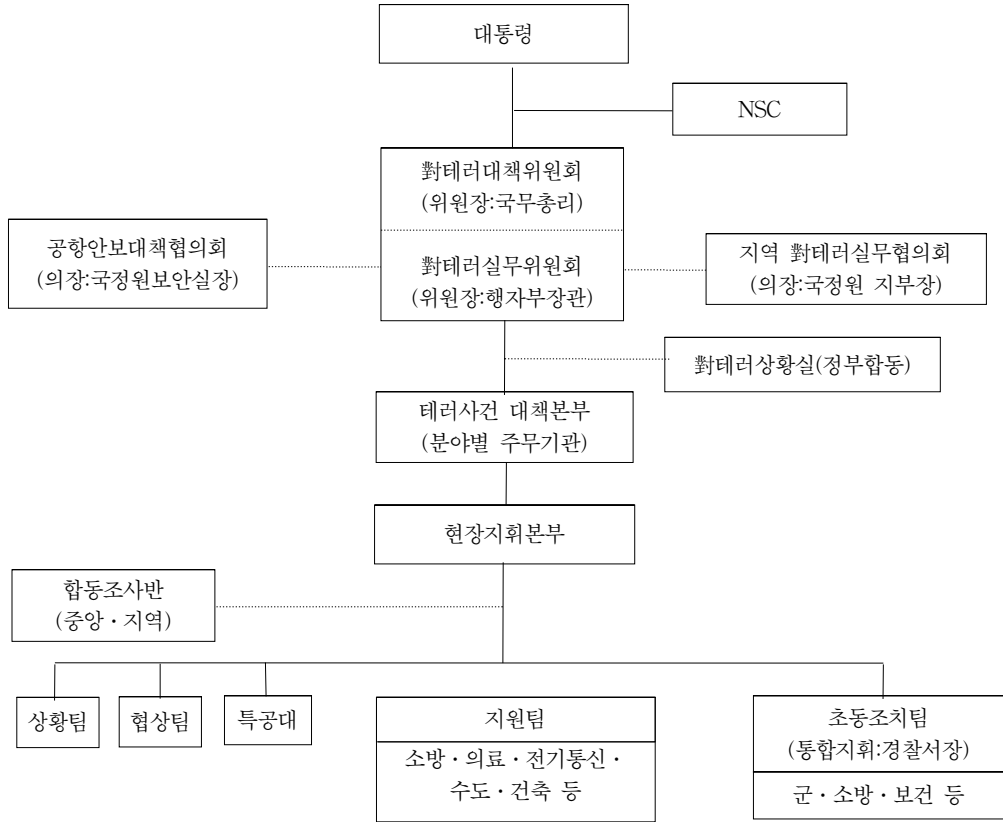
공격의 유형	예상 인명피해	실현 가능성 정도
성공적인 생물무기 공격(에볼라 바이러스, 홍역, 탄저균 등의 비밀 살포)	1,000,000	지극히 낮음 (extremely low)
주요 도시에서의 원자탄 폭발	100,000	매우 낮음(very low)
원자력 발전소 혹은 유독 화학공장 공격	10,000	매우 낮음(very low)
고층건물이나 경기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초보적인 생화학 공격	1,000	낮음(low)
열차나 항공기에 대한 단발성 공격	250-500	낮음(low)
혼잡지역에서의 폭발물이나 개인화기를 사용한 자살테러	50-100	중간(modest)

위에서 보듯이,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는 핵무기 파괴력 못지않은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²²⁾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테러의 개념과 현대사회에서의 뉴테러리즘과의 개념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과학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테러의 공포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훈령 제47호에 의하면 대테러 대책기구와 대테러사건 대응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21) 출처: Michael O'Hanlon 외, Protecting the American Homeland: One Year On(Washington, DC:Brooking Institution Pres, 2002), P. 6; 원 출처는 미 의회 기술평가국의 의 보고서.

22) 이상현, 「21세기 안보환경 특성과 테러위협」, 세종정책토론회 보고서, 세종연구소, 2004, p. 28.

〈그림 3-1〉 대테러대책기구 종합체계도



최상의 대테러 대책기구는 대통령 직속인 대테러대책위원회가 있다.

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정원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책, 협의, 결정의 역할을 한다. 현재 20개 부처가 각기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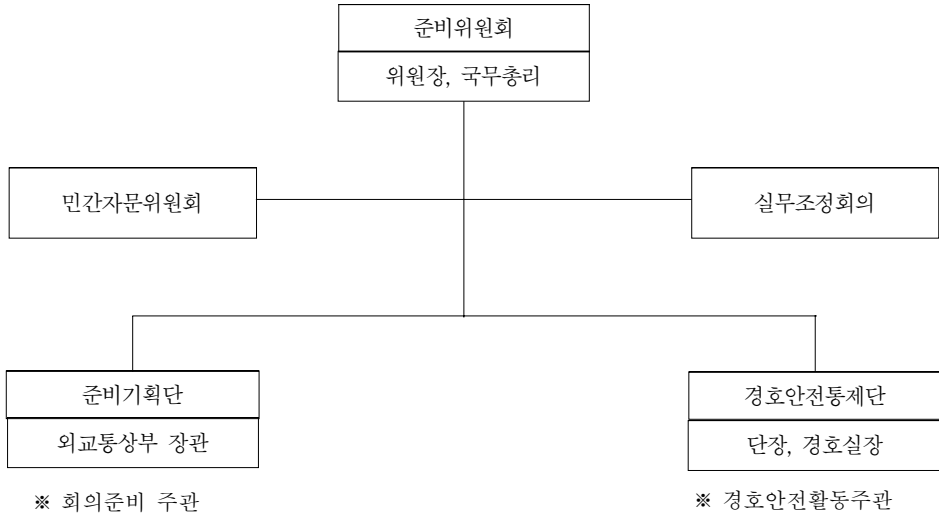
그러나 행정기관과의 여러 가지의 독자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난 16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상정하였으나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하여 자동폐기에 이르렀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선진국의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6개국에서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반테러는 국제적 추세이다.²³⁾

우리나라의 부산 APEC 정상회의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경호안전 통제단은 대통령 경호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경호실장 주관 하에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정상회의 관련 경호안전대책 수립의 임무를 하고 있다.²⁴⁾

23) 국정원, 「테러방지법 설명자료」(2003.12), pp. 3-4.

24) 이황우·곽대경, 「부산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제21호, 2005, p. 296.

〈그림 3-2〉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 체계도



출처 : 부산 APEC기획단, 2005 : 32.25)

위에서 본 표와 같이 현황표에서 볼 때 예상되는 테러의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 및 대응책으로는 첫째,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센터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테러위협통합센터(TTIC), 영국은 합동 테러분석 센터(JTAC), 캐나다는 안전정보부 산하에 종합국가보안평가센터(INSAC), 호주는 보안정보부 산하 국가위협평가센터(NTAC), 싱가포르와 태국은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조정센터를 각각 설립하고 있다. 그래서 대테러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20개의 정부 부처에서 제각기 분야별 임무를 맡고 있다. 다른 나라와 같이 통합된 대테러센터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전문 통합부서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통합된 부서(가칭 : 대테러안전부)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속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응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신속한 테러예방은 대테러 방지법의 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들과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업무를 민영화에 따른 전담기구, 협력조직이 필요하다.

25) <http://www.apec2005.org/>(APEC 준비단)

26) 체제병, “국가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2004), pp. 57-61.

다섯째, 테러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즉, 테러 발생의 강도, 확률, 정도 등을 조기에 방어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화 된 테러경보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2〉 주요국의 테러경보체계

	주무기관	경보단계의 수	경보단계의 표시방법	이중경보단계 유무	경보발령시 보호시설 분류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	색깔	무	무
호주	호주보안정보부(ASIO: Australian Security Information Organization)	4/9	언어	유	무
프랑스	내무부 경찰성 산하 대테러 조정반(UCLAT)	4	색깔	무	유
영국	합동테러분석센터(JTAC)	6	언어	무	무
독일	독일연방수사국(BKA)	5	언어	무	무
홍콩	홍콩경무청	3/6	언어	유	무

위 테러경보체계 표와 같이 너무 상세하게 해서도 곤란하고 너무 단순하게 해도 문제가 된다. 즉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각 기관별, 지역별, 개인별로 달라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가 편차를 인식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주무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정보수집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 전략도 난해하다.²⁷⁾

IV. 민간시큐리티 상호협력 방안과 대응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11테러이후의 테러리즘의 양상은 최첨단화된 대량살상무기와 과학화된 테러기법이 종교, 문화, 정치적으로 사회적 일탈의 방향으로 다양화, 복잡화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본 연구자는 사료된다. 그 이유로는 국가중요기관이 통제하지 않는 국제적 대기업 시설과 인적자원에 대한 테러의 대응시스템은 국가에서 경호경비를 해 주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물, 생화학, 원자력 등의 최첨단화된 뉴테러리즘의 수단에 대해서는 시급히 민영화된 경호경비 관련분야와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테러활동에서도 민간부분시설, 다중시설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시설보다는 민영화된 시설분야가 더욱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27) 전재성, 「외국의 테러경보 발령시스템 실태 및 현황」, 세종정책토론회 보고서, 세종연구소, 2004, pp. 135-140.

되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2002한일월드컵 당시 일본은 대부분 경기장의 대테러대응에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²⁸⁾ 아래 표와 같이 경기장의 시설물 출입관리, 수하물 및 반입 물품검사, 긴급 상황 대응, 차량검문 및 차량 유도, 기타 안전과 관계된 제반 시큐리티활동 등을 책임지게 하였다.²⁹⁾

〈표 4-1〉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의 일본지역 경기장 민간시큐리티활동 현황

(단위 : 명)

경기장	경비원수	정리원수	소 계	자원봉사자	합계
삿 포 르	870	251	1,121	696	1,817
미 야 기	851	175	1,026	474	1,500
이바라기	902	156	1,058	531	1,589
사이마다	1,031	191	1,222	834	2,056
요코하마	1,397	264	1,661	829	2,490
니 가 타	869	78	947	606	1,553
시즈오카	829	270	1,099	650	1,749
오 사 카	926	225	1,051	586	1,637
고 베	925	174	1,099	449	1,548
오 이 타	883	118	1,001	504	1,505
합 계	9,486	1,902	11,285	6,159	17,444

자료 : 일본전국경비협회, Security Times, 2002년 10월호, Vol. 274., p. 12.

선진국의 형태로 볼 때 일본 외에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각각의 중요행사 및 회의, 국가주도의 행사에도 민영화 된 경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시큐리티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LEAA(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가 「환경 설계에 의한 범죄예방대책(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국가차원에서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어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실질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중요시설에서는 특수경비원 제도를 두어서 민영화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화, 복잡화, 과학화되어지고 있는 테러의 기법에서 대상, 범위, 수단, 주체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대응하기에는 여러모로 볼 때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전에 미치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분

28) 이윤근, 「범죄예방을 위한 공경비 섹터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국제학술 세미나, 2003, p. 111.

29) 일본전국경비협회, Security Times, 2002년 10월호, Vol. 274, pp. 13~14.

류하여 경호경비는 군,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물적,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테러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대테러 대응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전문 관련 전공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에 따른 해결방법으로서는 경호경비 관련학과에서 대테러 전공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경호경비의 업무가 곧 테러의 대응전략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영역으로 전문가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테러 전공자들의 주요 과목으로는 대테러 정보(활동, 분석, 정책), 테러의 기원, 테러학개론, 국제테러조직론, 테러위해 분석론, 대테러전략전술론, 테러정보 분석론, 사이버테러론, 대테러장비 운용론, 대테러경호경비론, 대테러현장실무, 대테러정책론, 대테러 안전관리이론 및 실제, 대테러법, 생물·생화학테러, 대테러 경영론, 대테러 실무사례 세미나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이런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테러 전공자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테러학 전공과정을 대학에서나 경호관련 학과에서 세분화 된 테러학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따른 대테러 전문과정과 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하여 경호경비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테러 전문가를 육성해야 될 것이다.

둘째는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테러의 종류로는 육상 테러, 해상 테러, 공중 테러, 사이버테러로 크게 나누지만 세분화하면 수단, 주체,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대테러의 전문 자격증 제도로는 등급별 차등을 두어 선진국에서 민간시큐리티 안전산업에서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과 같이 테러전문 자격증도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시큐리티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자격증 종류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예로 각 시설별 민간경비 자격증, 교통, 방법, 컴퓨터, 호송경비, 검색 등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⁰⁾ 이에 따라서 대테러 전문 자격증도 단계별로 1급, 2급, 3급 자격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³¹⁾

30) 박준석, 「경호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7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2001, pp. 33-36.

31) 박준석·박대우, 「한국 민간경호경비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제7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2004, p. 202.

1. 직무개요 및 자격관리

〈표 4-2〉 대테러전문가 직무개요 및 자격관리

자격종목	한글 : 대테러 전문가 영문 : Terrorism Specialist	
직무내용	고용주나 시설주가 원하는 장소의 테러방지 및 억제업무 담당 대테러경비안전계획 수립과 지도감독	
등급	없음	
자격취득요건	일반	만 20세 이상 자격기본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격 부여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의 경호경비관련학과 졸업자, 경비사 자격증소지자로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검정시기	매년 4월(연 1회)	
검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면접, 신체검사 2차 지정연수원 교육 후 필기, 실기고사 실시	
연수교육시간	표준교육과정 총 180시간	
최종합격요건	출석률 80%이상 출석과 과제물제출, 자체필기고사 합격(70점)	

2. 연수내용 및 교육과정

〈표 4-3〉 대테러전문가 연수내용 및 교육과정표

구분	순위	교과명	시간	교과내용	비고
필수	1	민간경비론 (범죄 대책론)	20	민간경비기초이론 민간경비 발전사 국내민간경비 현황 대테러법	
	2	테러학	40	테러학개론 국제테러이론 대테러정책론 테러정보분석론 테러의 기원(운용론) 중동지역의 테러리즘의 연구 대테러정보, 활동, 분석	
	3	소방학	14	소방안전 방화관리 위험물취급	
	4	헌법 및 형사법	30	경비업법, 대테러법	
	5	경호무도	14	경호무도, 호신술, 체포술	실기
	6	대테러 현장실무실습	18	대테러현장실무 현장실무사례연구	실기
	7	안보교육	6	정보보호, 보안업무	
	8	응급처치 및 구급법	10	응급처치원칙 응급을 요하는 증상 기본 인명 구조법	실기
	9	대테러 장비교육	18	대테러장비운용법, 무기조작	실기
	10	안전교육	10	안전교육방법 안전관리매트릭스작성법	
	11	영어	20	전문영어	이론 및 실기
	12	컴퓨터	20	관련 IT과목	이론 및 실기
		12개 과목	240		

위의 <표 4-3>에 기재된 교과목은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³²⁾를 참고하여 재 작성하였다.

3. 자격검정 시험과목

<표 4-4> 자격검정 시험과목

구 분	1급	2급	3급
필 수	전문영어, 컴퓨터	영어, 국제테러이론, 대테러정책론, 대테러법,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연구	영어, 테러학개론, 경호경비관련 이론, 대테러법, 대테러정보학
전공 이론	현장실무사례연구, 대테러경영기법	테러의 기원, 테러정보 분석론, 테러위해 분석론	대테러 장비 운용론, 대테러 현장 실무, 대테러 안전 관리론
전공 실기	종합적 매뉴얼의 분석능력 평가	각 전공별 테러상황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실행능력 평가	대테러 장비 운용능력 평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수한 대테러전문가를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실기를 평가한 후 합격한 자로서 단계별 이론 교육을 한 다음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전문가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4. 자격 취득방법

<표 4-5> 자격 취득방법

구 분	검정절차	합격기준	공통사항
1 급	실기, 면접	- 필기시험 100점 만점으로 하며, 과목당 60점 이상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 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2 급	필기 및 실기, 면접	-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3 급	필기 및 실기, 면접		

결론적으로 대테러 전문가의 자격은 많은 분야별로 즉 폭탄테러, 항공테러, 각 분야별 시설 테러, 해상 테러, 사이버 테러, 생물·생화학 테러 등의 자격증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즉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대테러 전문가로서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대응체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민영화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토안보국은 연방지원금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메릴랜드 대학, 남가주 대학, 미네소타 대학, 텍사스A&M대 등의 4개 대학에 대테러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대테러연구센터는 국제테러의 근원적인 발생원인 규명, 테러리스트단체들의 내부조직 및 운영형태

32) 박준석, 뉴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과 민간경호경비 연계성과 발전방안, 2005년 제7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2005. p.58.

의 파악, 테러사전차단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국은 테러범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정리한 국가기획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나리오는 각종 테러가 실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규모와 경제적 손실의 추정치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³³⁾ 우리나라 또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테러의 일어나는 세분화된 대응전략에 대해서 방향과 개발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테러 매뉴얼화를 위한 국가기관의 연구소를 활성화하여 상호협조체제를 갖춘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이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학계가 중심이 되어 지역, 직장,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대테러 안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긴급대피 준비상황, 비상용품, 신고요령 등을 대규모의 국민적 홍보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부산 APEC 정상회담과 같이 일부에서는 민간 경호경비업체의 첨단 시스템장비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테러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민·학·관의 협력체제와 종합적인 사회 안전 시큐리티 시스템의 발전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대테러 네트워크 구축과 안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민간 연구소에서 전문가 집단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 검증에 의한 정보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테러리스트들의 동향, 조직, 형태,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또한 테러리스트의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계몽과 홍보, 신고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테러 경보 체제를 전 국민들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테러 경보 도입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적,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통한 즉 공청회, 전문가 면담 조사,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테러 연구소에서 전략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업무는 20개 정부 부처가 각기 수행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제 구축 및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국내외 적으로 대테러 정책 강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정당하다고 본다. 선진국에서는 9.11 테러이후 테러 방지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고 있다. 현재 우리도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하고 있지만 좀 더 보강된 대테러 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자격 제도, 대테러 전문가 양성, 시설, 전문 교육훈련, 행정적인 기구를 대폭 확대 하는 내용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시민 단체에서 인권 침해의 논란이 있어서 대테러법 제정이 통과되는데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역할을 학계나 민영화 된 연구소 및 센터에서 적

33) 장석현,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 제7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2005. pp. 8-9.

극적인 국민들의 계몽활동을 확대하면 지금보다는 우선적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접근하고 국민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 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전문화된 분야별 대테러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학계가 중심이 된 분야별 대테러 연구센터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홍보활동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학·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각론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러학의 학문적 정립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관 협력에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시큐리티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 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 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시큐리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박준석(2003). 「21세기의 테러에 대한 동향과 대응방안」,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p.105.
- _____(2005). 「뉴테러리즘의 현황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p. 157.
- _____(2001). 「경호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7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 세미나, 2001, pp. 33-36.
- 박준석·박대우(2004). 「한국 민간경호경비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제7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p. 202.
- 이대우(2004). 「한국의 국가안보와 대테러대책」, 세종정책토론회 보고서, 세종연구소, p.167.
- 장석현(2005).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p. 10.
- 신의기(2006). 각국의 테러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대테러 학술세미나.
- 장석현(2005).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 제7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pp. 8-9.
- 제성호(2005). 「9.11 테러이후 미국의 대테러 대응체계 변화」, 대테러연구논총 제2호, 국가정보원, p. 17.
- 최진태(1998). 테러·테러리스트·테러리즘, 서울 : 대영문화사.
- 국가정보원(2003). 「2002년도 테러정세」, pp. 31-38.
- _____(2007). 월간테러정세, 2월자.
- _____(2007). 월간테러정세, 4월자.
- 이상현(2004). 「21세기 안보환경 특성과 테러위협」, 세종정책토론회 보고서, 세종연구소, p. 28.
- 국정원(2003). 「테러방지법 설명자료」 12월, pp. 3-4.
- 이황우·곽대경(2005). 「부산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 행정학회 제21호, p. 296.
- 체재병(2004). “국가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 pp. 57-61.
- 전재성(2004). 「외국의 테러경보 발령시스템 실태 및 현황」, 세종정책토론회 보고서, 세종연구소, pp. 135-140.
- 이윤근(2003). 「범죄예방을 위한 공경비 섹터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국제학술세미나, p. 111.
- 일본전국경비협회(2002). Security Times, 10월호, Vol. 274, pp. 13-14.

2001 테러법 제 89조.

2000 테러법 제 58조 13-18항.

법규명령 91-1051, 91-1052.

법규명령 95-1211.

프랑스의 예심판사제도에 관하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각국의 구속제도, 1991, 136-138면 참조.

A. Vercher, *Terrorism in Europe: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Analysis*, Oxford: Clarendon Press, 1992, pp. 320-321.

Michael O'Hanlon 외, *Protecting the American Homeland: One Year On* (Washington, DC:Brooking Institution Pres, 2002), P.6; 원 출처는 미 의회 기술평가국의의 보고서.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curing Our Homeland*(2004), p. 3.

The Department of State, *Fact Sheet: Bush to Create 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 28 January 2003. <http://usinfo.state.gov/topical/pol/terror/03012806.htm>.

John O. Brennan, "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 Statement," (2003. 7. 8),

<http://www.apfn.net/messageboard/08-07-03/discussion.cgi.93.html>

Washington Post, January 29, 2003.

Jenkins, Brain M. *International Terrorism: the other War*. Rand Corporation publication R-3302-AF. P.15..

<http://www.terrorism.or.kr> (한국 대테러리즘 연구소)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http://www.apec2005.org/>(APEC 준비단)

ABSTRACT

Counter-Terrorism Strategy of Terrorism and Developmental plan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Park, Jun-Seo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construction device that can transform a public safety, security service, security system on counter-terrorism device system, from government leading type to private management type.

There are purpose on this thesis to research for the bring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 and about all sorts of developed device among our country's counter-terrorism situation and through comparing developed country's private security's developing device.

This summary of thesis is like below. First we need to establish total counter-terrorism center, like developed country on national corresponding strategy. Second, we need to make an organization as a country security department unified as an America's President directly belonging organization.

Third, it is to legislate about an counter-terrorism. Fourth, we need to make a cooperate system according to counter-terrorism duty come under private management, so that can recover a trust among people.

Fifth, a terror warning system is necessary. Private security's mutual relationship and developing devices is

First, it is necessary to br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

Second, it is necessary to bring in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 Third, counter-terrorism research center that come under private management is necessary. The university, private security related academy, should establish research center fo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s specialization , subdivision. It is considered that various research need to be continued after by bring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 transforming a consciousness , counter-terrorism education, building an equipment and education center, not for a special group, that can minimize human infringement .

key word: Counter-terrorism, Private security,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